

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9. 9 평창군수(내무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1998. 9. 15
- 다. 상정일자 : 1998. 9. 16 제59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 
제2차 본회의

2. 제안이유

- '98년도 조직개편으로 계제가 폐지됨에 따라 계장으로 표기된 부분을 조직개편 내용과 부합되게 조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읍면의 계장이하 소내 전보권을 “읍·면직원의 소내전보권”으로 변경

4. 검토의견

- 실제내용이 계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 “읍·면의 계장이하 소내 전보권”이란 내용은 “읍·면직원의 소내 전보권으로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- 기타 자구 및 내용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.